

의안번호	2208319
의 퇴 인	송언석 의원
회 답 일	2025. 5. 1.
추계번호	25A1069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3항 (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)	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 <u>500억원 미만인</u>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<u>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</u>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3항 (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순공사원가의 98%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는 예정가액의 기준을 현행 1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인상하려는 것임(제10조제3항 개정)
- 개정안과 같이 98%의 낙찰하한율¹⁾이 적용되는 공사 예정가액 기준을 현행 1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인상할 경우 최종 낙찰률 및 낙찰가액 증가에 따른 국가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1) 다른 심사항목의 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 투찰률을 뜻하며, 현행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낙찰하한율을 98%로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투찰시 적격심사의 평가대상에서 배제함.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구간의 연차별 공사건수 × 건당 평균 공사가액 × (개정안에 따른 낙찰하한율 98% - 기존 평균 낙찰률)의 누적 합계로 추계할 수 있음

$$\circ \text{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} = \sum_{t=1}^5 (N_t \times A_t \times (98\% - \alpha_{\text{기존낙찰률}}))$$

t : 해당 연도 (개정안 시행 1년차부터 5년차까지)

N_t : 연도 t 의 100억 이상 500억원 미만 구간의 공사 건수

A_t : 연도 t 의 100억 이상 500억원 미만 구간의 1건당 평균 공사가액

- 예를 들어 t 년도의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구간의 공사건수가 10건, 평균 공사가액 200억원, 낙찰률 증가폭은 3%p 일 때 t 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60 억원으로 추계할 수 있음
-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고·통지될 예정가액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구간의 공사건수와 공사가액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, 동 구간의 과거 공사실적 및 낙찰률 자료 또한 가용하지 못한 관계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
- 참고로 조달청 시설사업 통계 중 적격심사 대상 사업은 2023년 기준 2,514건, 공사가액 8조 5,790억원이며 평균 낙찰률은 87.16%임.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100억원 ~ 500억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공사건수 및 가액, 낙찰률 통계는 현재 조달청 전산시스템 개편으로 추출이 곤란한 상황임

[표 1] 적격심사 대상 시설사업 경쟁입찰 실적: 2019~2023년

(단위: 건, 억원, %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평균
건수	2,471	2,224	2,347	2,207	2,514	2,353
금액	63,933	57,933	63,137	71,915	85,790	68,542
낙찰률	86.6	87	87.3	87.1	87.16	87.0

주: 신규공사, 총공사 부가금액 기준(기술용역 제외)

자료: 조달청, 조달통계(www.pps.go.kr)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따라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국회예산정책처	추계세제총괄과
과	장 권아영
추계세제분석관	태정립
연 락 처	02-6788-4652
	jitae@nabo.go.kr
